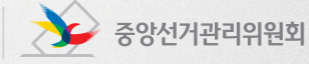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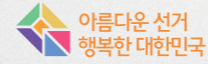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제보·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한 표의 무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민주시민성 함양에 기여하는 방송



www.nec.go.kr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 02) 503-1114

제20대 대통령선거

- 선거일 투표** 3월 9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 사전투표** 3월 4일(금)~5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유권자가 참여하는
희망의 선거

선거과정과 선거관리가
공정한 선거

정당·후보자 모두가 승복하는
화합의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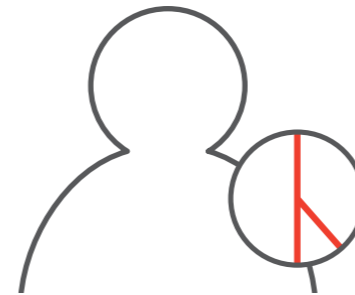


선거정보 확인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선거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선거 일정

01	거소·선상투표 신고기간		02	후보자등록 신청	
2월 9일(수)~2월 13일(일)까지, 5일간			2월 13일(일)~2월 14일(월)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03	선거운동기간		04	투표안내문 발송 (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2월 15일(화)~3월 8일(화)			2월 27일(일)까지		
05	사전투표		06	선거일 투표	
3월 4일(금)~3월 5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3월 9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 단, 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인 확진·격리 유권자는 관할 보건소 허가 시 오후 6시 전 투표 가능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사람은
3월 9일(수) 대통령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18세 이상의 사람 중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제45조·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어 투표할 수 없습니다.

투표소에 가기 전, 꼭 확인해주세요!

1단계

후보자 정보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 방문

정당·후보자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거리 등에 게시된 선거벽보 살펴보기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경력, 학력 등이 게재된 선거벽보는 2월 21일(월)부터 거리 등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서 확인 가능



세대마다 발송되는 선거공보 살펴보기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이 게재되어 있는 책자형 선거공보 두 번째 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 인적사항과 재산 및 병역·납세·전과기록 등의 상세한 정보 확인

* 책자형 선거공보는 **2월 23일(수)**까지 발송

* 전단형 선거공보는 **2월 27일(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

2단계

정책과 공약 확인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 방문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공약과 선거공보를 확인하고 비교해보기



후보자토론회 시청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대담·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 비교·검증
-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보기 가능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다양한 정보 확인

- 방송·신문 등의 선거, 정치 관련 기사 확인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선거운동 살펴보기

사전투표

※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관내·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시 3월 4일(금)~3월 5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서 확인 가능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관내 선거인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
 ㄱ.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ㄴ.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 → ㄷ. 투표용지 받음 → ㄹ. 기표 후 관내사전투표함에 넣음

관외 선거인

관내선거인이 아닌 사람
 ㄱ.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ㄴ.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 → ㄷ.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받음 → ㄹ.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합하여 관외사전투표함에 넣음

선거일 투표



일시 3월 9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 단, 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인 확진·격리 유권자는
 관할 보건소 허가 시 오후 6시 전 투표 가능

장소 지정된 투표소
 투표안내문 또는 내 투표소 찾기(www.nec.go.kr)에서
 확인 가능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선거일 투표 절차

ㄱ.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ㄴ.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손도장 →
 ㄷ. 투표용지 받음 → ㄹ. 기표 후 투표함에 넣음

주의하세요!

- 선거인은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좋은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과 함께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 등이 장착된 전용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출입하기 어려운 투표소에 임시기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체장애로 직접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등은 거소투표신고 (2월 9일~2월 13일)를 하면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3월 4일~3월 5일)과 선거일(3월 9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월 2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과 신뢰의 선거문화가 꽃피울 수 있게 앞장서겠습니다.

- 투표 과정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투표함 개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수봉인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투표함 이송 시에는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 누구에게나 개표절차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사람, 일반 유권자로 구성된 개표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개표 과정을 관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